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장선배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1월 6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1월 10일

3. 제안이유

도내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전국 최고 수준인 충청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각종 호흡기 질환 및 환경적 피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사항을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과 세부사항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내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